

영국신문평의회소개

I. 평의회 설립배경

영국의 신문평의회(The Press Council)는 스웨덴(1916), 핀란드(1927), 노르웨이(1928) 등에 이어 1953년에 왕립신문위원회(Royal Commission on the Press)의 권유로 설립되었다.

1947년 영국내 신문의 소유권관계 등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제 1차 왕립신문위원회가 설치되었는데, 이 위원회는 1949년의 보고서를 통해 신문은 공공사회와의 관계를 스스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언론계와 비언론계가 공동참여하는 신문평의회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신문경영인측에 의해 외부인사의 참여가 반대되자 법률에 의한 타율적인 규제기구의 설립이 의회에서 거론되게 되었다. 이에 당황하게 된 언론위원회는 1953년 25인으로 구성된 「신문총평의회」(General Council of the Press)를 발족시켰다.

북구제국에 비해 비록 늦게 시작된 제도이긴 하지만, 영국의 신문평의회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정평이 나 있는 언론자율규제기구로 지적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모델로 삼고 있는 모범적인 평의회로 평가받고 있는 실정이다.

원래 영국은 언론 자유주의이론이 지배해있는 국가였다.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시인 존 밀턴(John Milton)은 1643년 그의 저서 「아레오파지티카」(Areopagitika)를 통해 언론의 자유를 항변하고 있으며, 그 위 법률사상가 존 로크(John Locke)도 자연법리론을 중심으로 언론자유를 천부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상들은 미국의 독립선언과 헌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언론자유주창의 시조국가인 영국이 1940년대 들어 언론의 책임측면을 강조하게 된 것은 사회의 산업화와 관련이 있다. 산업혁명을 거친 이후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면서 언론도 기업화와 상업화경향을 추구하게 되었고 각 언론사간에 경쟁도 치열해져 간다.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언론은 본연의 사명감을 망각하고 센세이셔널리즘에 입각하여 흥미위주의 보도를 일삼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도 늘어가게 되었던 것이다.

위와 같은 현실 속에서 언론의 사회적 책임문제가 대두되게 되었고, 미국에서도 제 2 차세계대전 이후 언론의 사회적 책임문제가 대두하게 되었다. 언론의 책임측면을 강조하는 자들은 인간의 윤리의식에 의문을 제기한 자들이며 언론도 정의구현을 등한시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는 기관임을 주장하고 나섰다. 영국의 경우 왕립신문위원회가 1947년 결성된 후 일련의 연구와 조사들을 통하여 언론의 사회적 책임문제를 이론으로 정립하게 되었고, 신문평의회가 이런 책임측면을 강조하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배태된 역사적 소산물임은 주지의 사실인 것이다. 자유언론의 선두주자인 영국이 책임언론의 기수가 된 것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영국의 성숙한 일면을 보여주는 한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II. 평의회 변천과정사

1953년 발족된 신문총평의회는 언론계 내부인사로만 구성되었고, 의장도 왕립신문위원회의 권고와는 달리 언론계 내부인사로 하였으며, 아무런 제재의 권고도 없는 허약한 기구였다. 신문총평의회가 무기력한 활동을 계속하는 가운데 1960~61년 사이에 5개 신문사가 폐업 또는 병합하는 격변이 일어났다. 신문의 통폐합충격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으며, 신문의 소유독과점 현상을 진단하고 연구하기 위해 의회의 발의로 제 2차 왕립신문위원회가 탄생되었다.

이러는 가운데 1963년 봄에 간첩 배살(Vassal)의 회고록게재사건과 창부 킬러(Keeler) 양 수기계재사건이 발생했다. 그 당시 영국의 신문들은 유죄를 선고받은 간첩에게 돈을 주고서 회고록을 입수하여 게재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저명인사들과의 염문을 내용으로 하는 수기도 돈을 주고 사들여 게재했으며, 악명높았던 죄수들의 회고록도 게재하는 악폐를 조장했었다. 그리하여 「수표책 저널리즘」(Checque-Book Journalism)이라는 새로운 용어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언론현실의 심각성을 감지한 제 2차 왕립신문위원회는 신문총평의회에 위원구성체계 개편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회도 제 2차 왕립신문위원회의 건의를 평의회가 받아들이지 않으며 실정법을 제정해서라도 타율적 규제기구를 설치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신문총평의회는 1963년 7월 개편을 단행하고, 「신문총평의회」라는 명칭을 「신문평의회」(The Press Council)로 개칭했다.

이때 일반 시민대표로서 비언론계 위원 5인이 선출되었으며 의장이 비언론인 가운데서 선출되었고, 초대 비언론인 의장으로서 데블린(Devlin) 경이 취임했다. 이로써 언론계위원 대 비언론계위원의 비율은 20 : 6이 되었다.

후에 신문의 보도문제 가운데 사생활침해문제가 심각해지자 제 3 차 왕립신문위원회가 결성되었고, 이 위원회는 신문평의회에 위원의 구성비율을 언론 대 비언론 동수로 하도록 건의했다.

◇ 영국신문평의회 불만호소처리 결과

(1979~1984년)

연도	심의결과 인도	認容	棄却	却		取 下 또는 중 단	調停者에 의한 조정성공	계
				사부국장에 의한	불만호소처리위에 의한			
1979년		27	34	45	55	364	17	542
1980~81년		64	63	124	150	1,075	29	1,505
1982년		46	35	44	78	487	12	702
1983년		62	62	50	98	678	29	979
1984년		72	61	53	89	617	20	912
계		271	255	316	470	3,221	107	4,640

그러나 신문평의회는 1973년에 그 건의를 부분적으로만 수용하여 구성비율을 20:11 (의장포함) 로만 조정했다.

제 3 차 왕립신문위원회는, 평의회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라도 위원구성비율이 동수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함으로써 신문평의회는 1978년 7월 언론계 대 비언론계 위원 구성비율을 18:18 동수로 재조정했다. 하지만 여기에 비언론계 출신의 의장 1인의 수를 포함시키면 비언론계 위원들이 다수측이 되는 것이다.

현재는 언론계 위원직 가운데 4인의 자리가 공식으로 남아있다. 그 이유는 전국기자연합회(the National Union of Journalists) 측에서 4인의 위원을 철수시켰기 때문인데, 철수동기는, 그들이 신문평의회가 신문사노조원들보다는 신문경영인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영국신문평의회는 여러차례의 개편과 변화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III. 평의회 구성

평의회는 2개의 상임위원회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것은 총무재정위원회(General Purposes and Finance Committee)와 불만호소처리위원회(Complaints Committee)이다.

총무재정위원회는 검열, 법정모욕 등 법률문제와 신문의 소유독점화문제를 다루며, 불만호소처리위원회는 일반시민의 불만을 접수·처리한다. 이 처리위원회는 불만호소 안건을 독자적으로 심의·처리할 집행권한을 갖고 있지만, 평의회 위원총회를 거쳐 최종 평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위원총회에서 심의되어질 때는 불만호소처리위원회의 평결을 최대한 참작하며 대폭 수정을 가하지 않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

평의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언론계출신위원 18 인과 비언론계 출신위원(일반시민대표) 18 인 동수로 되어 있으며 의장은 전·현법관 중에서 선출된다. 언론계위원들은 신문경영인 편집인, 기자들로 구성된다.

위원의 임기는 3 년이며, 보통 1 회 정도 연임되고 있다.

IV. 신문평의회 정관

이 신문평의회 정관은 신문발행인협회, 신문협회, 정기간행물발행인협회, 스코틀랜드일간신문협회, 스코틀랜드신문경영인협회, 기자연구원, 전국기자연합회, 영국신문편집인협회(이하 '구성단체'라 한다)에 의해 승인되었다.

제 1 조 설립 : 신문평의회 (이하 '평의회'라 한다)는 "신문평의회"라는 명칭으로 1953 년 7 월 1 일을 기해 자발적으로 발족한다. 평의회는 1963 년 7 월 1 일을 기해 이전의 방식과 명칭을 철회하지만 신문총평의회가 수행해 온 모든 업무에 대한 책임은 본 신문평의회에 그대로 이관한다.

제 2 조 임무 : 평의회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전에 확립된 영국신문의 자유를 보전한다.

(2) 직업적, 상업적 기준의 가장 높은 수준과 일치하는 차원에서 영국신문의 품격을 유지한다.

(3) 신문보도에 관한 불만호소나 신문사에 관련된 개인과 조직의 행위에 관한 불만호소를 심의한다. 불만호소를 처리하되 실제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하며 처리결과 및 조치들을 기록으로 남겨 둔다.

(4) 공익과 중요한 관련이 있는 정보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는지를 주시한다.

(5) 신문의 소유집중과 독점화 현상의 확대추세(신문사업의 소유권, 관리 및 성장의 변화과정도 포함됨)를 공개적으로 보고하며, 그와 관련된 통계정보도 공표한다.

(6) 적절한 기회가 되는 대로 영국정부, UN 의 산하기관과 해외 언론기관들에게 진정한다.

(7) 평의회는 활동상황 기록에 대한 정기보고서를 발표하며, 때때로 신문계의 발전과정과 그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 검토한다.

제 3 조 위원구성 : 평의회는 다음 위원들로 구성된다.

(1) 의장 : 신문사와는 무관한 자.

(2) 18 인의 위원들 : 이 위원들은 아래 제시된 각 기관들에 의해 비율에 따라 임명된다.

- 신문발행인협회... 인(이중 적어도 1 인은 경영인이 아닌 편집인이어야 한다.)

- 신문협회인(이중 적어도 1 인은 편집인이어야 한다.)

- 정기간행물발행인협회 (편집인 1 인 이상 포함) ... 2 인

- 스코틀랜드일간신문협회 ... 1 인

- 스코틀랜드신문경영인협회 ... 1 인

- 영국신문편집인협회 ... 2 인

- 전국기자연합회 ... 4 인

- 기자연구원... 2 인

(3) 18 인의 시민대표들 : 이들은 의장을 제외하고 평의회 전 위원수의 1/2 에 해당한다.

(4) 평의회 각 구성단체는 자문인 자격으로 평의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임원 1 인을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 이때 피지명인에게는 발언권은 부여되지만 투표권은 없다. 각 구성단체가 피지명인을 교체할 경우 평의회의 사무국장에게 7 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

제 4 조 임명방식

(1) 의장은 그 자신과 평의회에서 상호합의하는 조건하에 의장직을 수락하도록 요청받는다.

(2) 평의회 정관 제 3 조 2 항에 의거해서 지명된 위원들은 지명 당시에 신문, 정기간행물, 영국의 내외를 망라하는 통신사의 상임이사들이거나 편집 혹은 관리직에 종사하는 상근직원이어야 한다. 편집부분 종사 자격조건에는 또한 신문사, 정기간행물사, 통신사에 정기적으로 뉴스와 기사를 공급하는 직업적 자유기고가들도 포함된다. 어느 위원이 위와 같은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1 월내에 평의회의 사무국장에게 통지해야 하며, 그의 위원직은 3 월내에 종료된다.

(3) 시민대표 위원호선문제는 임명위원회(Appointments Commission)가 담당하되, 평의회가 임명위원회에 종종 제출하는 후보자명단 가운데서 선출한다. 이 시민대표 위원들은 부의장 피선임 자격조건을 제외하고는 위원직무상 권리, 특권 그리고 임무에 있어서 평의회 구성단체들이 지명한 다른 위원들과 차별이 없다.

(4) 임명위원회는 평의회의 의장과 다른 위원들에 의해 호선된 5 인의 인사들로 구성되며, 그들과 평의회 사이에서 상호합의조건에 따라 위원직을 수락하도록 요청받는다. 평의회의 사무국장은 임명위원회의 서기직을 수행하게 된다.

제 5 조 임기

(1) 제 5 조 3 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격을 구비하고 있으며, 위원으로 지명된 인사는 3 년 계속 또는 지명된 후 세 번째 회계년도 종결시까지 중에서 기간이 더 긴 쪽을 택해 위원직을 수행하게 된다.

(2) 제 3 조 2 항에 규정된 단체의 피지명자는 위원직 임기말에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 재지명받을 수 있다.

(3) 임기에 재선된 위원을 제외하고, 제 4 조 3 항에 의거하여 임명위원회가 선출한 처음 6 인 가운데서 2 차 2 인은 위원임기 1 년반말에 퇴임하며, 나머지 4 인은 위원임기 2 년반말에

퇴임한다. 앞의 방식대로 퇴임하는 위원들은 추천에 의해 결정된다. 퇴임하는 위원들도 재선출될 자격이 있으며, 이후로는 그들 평의회 위원직의 정상임기와 퇴임위원 후임자의 정상임기는 3년이다.

제 6 조 공석충원

불시에 발생한 공석을 충원하게 되는 인사는 전임위원이 지명된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위원직에 임명된다. 이와 같이 공석충원시에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 동안만 위원직을 수행케 되며, 재선될 경우는 정상임기를 따르게 된다.

제 7 조 절차

평의회는, 제 2 조에 규정된 임무들의 수행촉진과 목표달성을 위하여 평의회가 결정내린 바에 따라 모든 절차 및 조치를 규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평의회 구성단체들로부터 부여받고 있다. 의장과 각 위원들은 거수에 의해서든 투표에 의해서든 어떤 안건에 대하여 1인 1투표권을 갖는다. 그러나 표결안건이 찬반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당분간 최종결정투표권을 갖게 된다.

제 8 조 정족수

평의회 회의의 정족수는 18인이며, 앞의 제 3 조 2 항에 규정된 단체의 위원들 수가 9인 이하가 되지 않아야 한다. 앞의 규정 대신에 다음 규정이 1981년 7월 31일까지 적용된다.
1기 :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평의회가 시한연장을 결정하게 되면 그 기간까지 적용되게 된다. 여기서 2/3 이상이라 함은 적어도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의회 회의 정족수는 제 3 조 2 항과 3 항에 규정된 위원 중 재임위원 전체인원의 반수이어야 한다. 그리고 제 3 조 2 항에 규정된 위원 가운데 적어도 현임위원의 반수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 9 조 부의장 또는 합동부의장단

(1) 평의회는 매년 12월 31일 지난 후 첫번째 열리는 회의에서 제 3 조 2 항의 규정에 의해서 임명된 언론계 위원들 중에서 부의장 1인 또는 재량에 따라 합동부의장만을 선임해야 한다. 이들은 다음 회계연도의 첫번째 평의회 회의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2) 부의장직에 예기치 않은 공석이 발생할 경우 후임자 결정을 위한 보선선출을 공석발생 후 14일이 지나자마자 평의회 회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 부의장 후보지명을 수락한 위원들은 선출회의 전에 서면으로 지명을 받고 찬성을 얻어야 한다. 만일 서면에 의한 지명이 없을 경우, 선출회의시 모두 지명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임기만료된 부의장은, 제 3 조 2 항 및 제 4 조 2 항의 규정에 의거해 볼 때 자격을 상실하지 않았다면 재선임될 수 있다. 바른 후보자 지명 동조가 없는 경우에는 임기만료된 부의장이나 합동부의장단이 재선임된 것으로 선포되어야 한다.

(5) 의장직이 공석이 될 경우 부의장이나 합동부의장만이 의장의 모든 직무를 대행해야 한다. 의장의 부재 시에는 부의장 또는 합동부의장만 중 1 인이 평의회 위원총회와 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해야 한다.

제 10 조 회의

회의는 1년에 최소한 5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의장은 처리해야 할 안건을 위해 특별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시특별회의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 또한 이 특별회의는 9명 이상의 위원들이 요청할 경우에도 사무국장에 의해 소집되어야 한다. 소집요구는 먼저 평의회 사무국장에게 제기되어야 한다.

임시특별회의 소집통고는 각 위원들의 개인사정을 고려하여 7일전에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한다.

제 11 조 위원회

평의회는 구체적 임무수행을 위하여 평의회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들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어느 위원회든 평의회로부터 명백한 권한을 위임받지 않는 한 집행권한이 없다.

매년 12월 31일 바로 앞서 열리는 평의회 최종회의에서, 의장과 부의장은 각 위원회에 기꺼이 봉직할 의사가 있는 위원들의 명단을 평의회로부터 인준받기 위해 제출해야 한다. 각 위원회의 위원들은, 자신들이 위원직을 인준받은 날이든 1월 1일이든 후자가 되는 일자로부터 시작하여 후임자가 같은 방식으로 직무수행을 시작하는 날까지 재임하게 된다. 어떤 위원회에 1인 혹은 그 이상의 공석이 발생할 경우, 의장과 부의장의 자유재량에 따라

공석을 보충할 위원의 명단을 승인받기 위해 평의회에 제출해야 하며,보충되어지는 위원은 전임자와 동일한 기간동안

직무를 수행케 된다. 각 위원회는 그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 가운데서 위원장을 임명해야 한다. 평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모든 위원회에, 직권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위원이 된다.

제 12 조 서식통고

회의개최에 관한 통지는 위원들의 현주소로 정확히 전달되어야 한다. 우발적 사고나 실수에 의해서 어느 위원이 통고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통고와 관련된 회의의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는 없다.

제 13 조 재정

평의회 금전적 비용은 평의회 구성단체들이 본 정관 뒤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연례적으로 불입하는 기부금에 의해 충당된다. 명시된 책정액수를 변동시키기 위해선 사전에 평의회 구성단체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 기부금은 매년 1 월 1 일에 불입되어야 한다.

평의회 이름으로 발행되는 모든 수표는 다음에 열거되는 인사 중 최소한 2인의 서명이 있어야 된다. -의장, 부의장, 사무국장, 서기관, 특별히 지명된 평의회 위원들.

제 14 조 교통비

평의회에 위원총회나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들은 교통비 명목으로서 철도를 이용할 경우 일등왕복요금, 항공을 이용할 경우 보통 왕복요금을 평의회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제 15 조 특별수당

제 3 조 3 항 규정에 의해 임명된 위원들은 평의회 위원총회 및 위원회 회의에 참석함으로써 소요된 실비(subsistence expenses)를 평의회가 정한 비율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제 16 조 해산

평의회 위원들은 평의회 자율적 본질과 독립성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판단되면 어느 때라도 평의회를 해산시킬 수 있다. 평의회 해산결의안은 임시로 소집된 특별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어야만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여기서 2/3 이상이라 함은 적어도 평의회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의미한다. 평의회 해산과 관련된 회의소집통고는 최소한 21 일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통고할 때 회의소집 목적에 관한 상세한 실명이 첨부되어야 한다. 평의회가 위원들을 소집할 때 평의회 구성단체의 사무국장들에게 회의의 목적이 해체목적에 떠났음을 통보해야 한다.

제 17 조 정관조문의 수정

평의회 정관조문을 수정하기 위해선 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2/3 이상이라 함은 평의회 전체위원의 최소한 과반 수 이상을 의미한다. 현재 발의중인 수정안에 대해 평의회 위원들과 평의회 구성단체의 사무국장들에게 최소한 28 일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어떠한 수정도 효력이 발생하지 못한다.

제 18 조 사무직원

평의회의 사무 및 행정업무는, 평의회가 결정한 기간과 조건에 따라 업무목적을 갖고 종사하기 위해 임명된 사무국장과 직원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한다.

제 19 조 정관절차 수정사 초록

*이하생략

V. 불만호소처리절차 규정

1. 신문평의회의 주요업무는 영국의 모든 신문에 게재된 기사에 대한 불만호소와 신문발행인들의 경영에 대한 불만호소를 처리하는 것이다.

간혹 미공표물에 대한 불만호소를 처리할 때도 있다. 신문평의회는 제 1 차 왕립신문위원회(the first Royal Commission on the Press)의 이유로 1953 년에 발족한 자율적 기관이다. 평의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원은 37 명으로 구성되는데, 거기에는 독립적 성격을 띠었으며 시민대표 출신인 의장 1 인과 언론계대표 18 인과 시민대표 18 인으로 이뤄져 있다.

2. 이 규정의 목적은 신문과 정기간행물의 부당한 보도와 그 매체의 발행인들의 부당한 행동에 대해 불만을 호소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것이다. 불만호소를 제기하는 데 드는 비용은 일체 무료이며, 개인이 불만을 호소하는 문제에 있어서 직접적이고도 사적인 이해관계가 전혀 있든 그렇지 않은 간에 영국의 모든 신문과 정기간행물을 대상으로 불만을 호소할 수 있는 권한은 어느 누구에든지 다 주어져 있다.

주요 임무

3. 평의회는 4 가지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전에 확립된 영국신문의 자유를 보전할 것.

(2) 직업적, 상업적 기준의 가장 높은 수준과 일치하는 차원에서 영국신문의 품격을 유지할 것.

(3) 신문보도에 관한 불만호소나 신문사에 관련된 개인과 조직의 행위에 관한 불만호소를 심의할 것. 불만호소를 처리하되 실제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하며 처리결과 및 조치들을 기록으로 남겨둘 것.

(4) 공익과 중요한 관련이 있는 정보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는지를 주시할 것.

불만호소의 영역

4. 시민들이 평의회에 불만을 호소할 수 있는 권리는 3 번 (3)항에 근거를 둔다. 평의회는 상업적 문제를 다루지 아니하며, 부채상환 및 재정적 보상문제에 관여할 수 없다.

5. 평의회 사무국장은 불만호소인들을 위해 불만호소절차에 관한 자문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사무국장과 다른 직원들은 특히 절차를 몰라 어려움을 겪는 불만호소인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불만호소인들에게는 친지와 다른 고문 (예를 들면, 국회의원· 지방 시의회의원· 무역관계기관 직원· 사무변호사 등등) 들과 유용하게 상의할 기회가 주어진다.

불만호소 절차

6. 어느 매체의 보도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는 자는 먼저 해당 매체사의 편집국장에게 서한을 보내는 것이 좋다. 부정확한 보도에 대하여 신속한 정정보도를 하기 위한 가장 간편하고 빠른 방법이 편집국장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는 것이다.

7. 6번과 같이 하지 않을 경우는 평의회 사무국장에게 불만호소사유서와 문제된 기사의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이때 사무국장은 제기된 문제에 관해 전혀 논평없이 해당 매체사의 편집국장에게 제출서류의 사본을 우송하게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편집국장에게, 신속하며 직접적인 회신을 하는 등의 일련의 행동을 취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8. 불만호소인은 해당 언론사와 주고 받은 모든 서한들의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9. 해당 언론사 편집국장의 반응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규정된 기간(2 주일) 내에 편집국장이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경우에, 불만호소인이 평의회를 통해 불만사항을 처리받기 원한다면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평의회 사무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의 문제된 부분과 문제삼게 된 이유를 밝힌 진술서.

(2) 해당 언론사의 편집국장이나 그의 비서에게 송부한 서한의 사본.

(3) 해당 언론사의 편집국장이나 그의 비서로부터 전달받은 서한.

(4) 이미 발행된 신문이나 정기간행물 가운데 불만호소 대상이 된 기사의 사본.

(5) 평의회에 제출된 불만호소의사를 밝힌 서류들은 평의회 사건기록철에 보관될 것이며, 제출

서류들은 불만호소인이 본 규정을 수락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10.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불만호소인이 자신의 불만호소를 지지해 주는 증인들이 서명날인한 진술서를 함께 제출한다면 사건해결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만약 불만호소인이 그렇게 할 경우 증인들의 성명과 주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불만호소인은 신청 초기에 이 절차를 밟아야 하며, 사무국장은 불만호소인에게 그런 진술서가 유리하게 작용할지를 논평해 주어야 한다.

조정절차

11. 보통의 경우에 언론사 측에서 신속하게 정정보도문, 해명문 혹은 사과문을 게재해 주기만 한다면 침해된 권익이 빨리 회복될 수 있다. 평의회의 조정(conciliation)절차는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계획된 것이다. 다른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불만호소인과 신문사 편집국장 사이에서의 직접적인 타협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조정자는 당사자들이 화해에 이르도록 비공식적으로 도와 줄 수 있다.

12. 불만호소인이 판단해볼 때, 자신이 호소한 안건이 쉽게 사전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면 조정자에게 협조요청할 수 있다(피신청인인 해당 언론사 편집국장도 같은 절차로 조정자에게 사전조정을 위해 협조요청할 수 있다). 조정자도, 안건이 사전조정하기에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양측이 화해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3. 조정작업은 당사자 양측의 동의하에 이뤄져야 하며, 화해가 결렬되고 평의회가 그 사건을 심의하게 되더라도 조정의 실패는 당사자 양측의 입장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조정작업 동안 조정자와 당사자 양측 사이에 오고 간 대화와 서한의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며 평의회측에도 보고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불만호소처리위원회 (the complaints committee)에도 보고되지 않아야 한다. 조정작업이 실패로 돌아가면 조정자에 의해서는 더 이상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평의회 사무부국장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불만호소처리부(the complaints department)의 직원들에 의해 이뤄진다.

14. 불만호소인이, 사전조정이 유용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조정자에게 협조요청 할 경우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 주어야 한바. 불만호소인이 접수된 후 곧바로 평의회 사무국장은 당사자 양측에게 안건심의로 들어가기 전에 조정자를 통해 사전조정 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조사

15. 조정작업이 시도되지 않았거나 당사자간에 화해가 결렬되면 사무국장과 그의 부하직원은 평의회를 대신하여 조사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조사작업은 불만호소인과의 서신교환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하며, 더 많은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으며, 문제된 보도가 신문윤리강령을 어느 정도 위반했는지도 판단해야 한바. 조사자들은 불만호소인에게 한 두 문장으로 된 짧은 진술문을 요구할 수도 있다.

16. 불만호소인이 문제된 보도의 윤리강령 위반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제시하면, 평의회는 이 불만호소건을 해당 언론사와 관계된 자료와 함께 불만호소위원회에 회부한다. 해당 언론사 편집국장은 이 문제를 담당기자와 상의하게 된다.

17. 관계사건의 모든 증거기록들이 불만호소처리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하며, 그 위원회는 언론계 대표와 시민대표 위원들의 동수로 구성된다. 불만호소처리위원회는 ① 개인의 권익을 침해한 사실이 증거불충분일 경우 사실심리를 중단할 수 있으며, ② 필요할 경우, 구두증거를 포함한 보충증거들을 요청할 수 있으며, ③ 평의회 위원총회에 심의결과를 제시할 권한이 있으며, ④ 바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18. 대부분의 경우에서 불만호소처리위원회는 사건기록철에 첨부된 서면증거자료를 토대로 평결하게 된다.

구두청문회

19. 피신청인 사건관계 언론사편집국장과 담당기자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 불만호소처리위원회에 출두해서 구두로 증거를 제시할 권리가 있다. 언론사측에서 출두하게 되면 불만호소인측도 출석요청을 받게 되고 구두증언하게 된다. 평의회측, 불만호소처리위원회 또는 사무국장은 당사자들을 대신하여 특별한 사건의 경우에서 당사자 및 증인소환이 필요하다고 결정내릴 수 있다.

20. 불만호소처리위원회가 개최하는 구두나 개회는 비공식적이다. 사건 당사자들은 법적 대표 성격을 띠지 못하며 그대신 고문으로서 친지를 대동하고 청문회에 참석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고문이 사건전체를 대표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21. 사건관계자료가 부족하다고 해서 청문회 진행이 차질을 빚지는 않는다. 청문회가장시간 내지 장시일 계속된다면, 평의회는 참석자들에게 제반 경비를 지불해야 한다.

22. 평의회가 구두청문회 개최를 결정하게 되면, 불만호소인은 평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구두청문회에 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평결

23. 불만호소처리위원회가 심의를 마친 후, 안건은 평의회 위원총회에서 조사자료, 증거자료, 구두청문회보고서를 참고로 해서 재차 심의되어진다.

24. 평의회에서 결정된 평결문은 대부분의 경우 신속히 각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전달되어지며 신문지면에 게재되도록 한다. 평의회에 의해서 불만호소인의 침해된 권익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일반적 방법은 지면을 통한 평결문게재이다. 그러나 불만호소인이 실질적인

이유를 들어 평결내용에 관계없이 평결문 게재를 회피할 경우는 예외이다. 불만호소인이 평결문 게재를 회피하고 싶을 경우 평의회 사무국장에게 가능한 한 빨리 통지해야 하며, 평의회는 평결문 발표없이도 심의를 계속 진행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불만호소 시기

25. 불만호소가 지체되었을 경우 조사과정이나 효율적 피해회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자는 신속하게 불만을 호소해야 한다.

26. 평의회는 특별한 이유없이 불만호소가 지체되었을 경우 그 안건을 각하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제된 기사의 공표일로부터 2개월이 도과할 경우 평의회는 그 안건을 각하시켜야 한다.

27. 평의회는 해당 언론사 편집국장에게 신속한 회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평의회 사무국장은 언론사측의 신속한 회신을 위하여 마감일자를 설정할 수 있다.

피해회복의 대안

28. 불만호소인이 신문평의회에 안건에 대한 조사와 평결을 의뢰할 경우 피해회복을 위한 다른 대안격의 조치를 취하지 말고 평결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법률소송제기 가능성 문제는 다음 항목에서 언급되어 진다.

법률소송

29. 신문평의회는 법과 관계없는 윤리기관이다. 평의회는 사법기관의 기능을 대신하지는 않지만 법률소송 문제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는 안건들을 심의할 수 있다. 불만호소인이 법원에 제소하려고 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엿보일 경우, 평의회는 불만호소인이 제소포기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본 안건을 심의, 평결하지 않는다.

이러한 원칙은, 해당 언론사 편집국장이 평의회에 조사에 협조하며 평결문 게재를 약속한다는 조건하에서 불만호소인과 평의회 사이의 협약이다.

연차보고서

30. 신문평의회와 평의회 활동에 관한 더 많은 정보가 연차보고서에 수록되어 있으며, 그 보고서의 명칭은 「신문과 국민」(The Press and The People)이다. 연차보고서는 평의회 사무실에서 1.5 파운드에 판매되고 있으며, 많은 공공도서관에 비치되고 있다. 또한 그 보고서에는 평의회가 심의, 처리한 사례들과 평결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긴급 정정보도 (Fast Track Correction) 제도

이 제도는 기명기사에 있어서 실제적인 오보가 발생했을 경우에 불만호소인이 이용함으로써 피해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는 제도이다.

1) 정정보도청구서는 기사공표일로부터 3일 내에 해당 신문사 편집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평의회에 불만호소절차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명기하면서 평의회에 제출했던 서류들의 사본들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불만호소인은 「정정보도문」을 직접 작성하여 신문사측에 제시할 수도 있다.

2) 신문사측은 청구후 3일 이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거나 불만호소인에게 반론을 제기해야 한다.

3) 불만호소인은 다음의 경우에 평의회에다 통지해야 한다(2일 내에 이루어져야 함).

(ㄱ) 신문사측으로부터 정정보도문 게재약속을 받았을 경우.

(ㄴ) 신문사측이 3일이 경과하도록 응답이 없을 경우

(ㄷ) 양측이 합의에 도달했지만 약속된 날짜에 정정보도문이 게재되지 않았을 경우.

4) 평의회는 불만호소인으로부터 불성립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심의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 심의회는 의장 1인과 위원 1인 (또는 부의장 1인과 시민대표위원 1인), 사무국장(혹은 그가 임명한 대리인)의 3인으로 구성된다.

5) 심의회에서 정정보도문 게재의 당위성이 인정되면 해당 신문사측은 기회가 닿는 대로 게재해야 한다. 만일 게재의 당위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불만호소인은 평상적인 방법으로 불만호소처리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반대로 신문사측도 심의회의 결정에 불복하려 할

때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불만호소처리위원회와 평의회 위원총회는 심의회의 결정을 참작해야 한다.

「심의회의」 결정은 만장일치제이며, 만장일치가 결렬되면 평의회가 그 안건을 관장하게 된다.

● 신문평의회는 법률문제가 아니라 윤리문제를 취급하는 기관이다. 불만호소인이 법원에 제소하려고 하거나 제소할 가능성이 있을 땐, 평의회는 그가 제소를 포기하지 않는 한 안건을 심의하지 않는다. 땐, 신문사측이 긴급정정보도제도(Fast Track Correction)에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해야만, 평의회는 불만호소인에게 제소포기를 강요할 수 있다.

VI. 신문평의회 원칙선언문

(The Council's Declarations of Principle) – 시민의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1966년 4월과 5월에 걸쳐 체스터 아시지스(Chester Assizes)에서 열렸던 「무어즈 살인사건」 공판에서 원고측 증인 한 사람이 피고에 관한 정보를 한 신문사에게 누설해주는 대신에 매주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 당시 법무장관 엘윈 존즈경은 하원에서 증언하기를, 뇌물을 받은 증인의 증언이 신문사로부터 받은 뇌물-의해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증언이 다소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공정재판에 나쁜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평의회는 이 사건 위에 공정재판을 위해 「원칙선언」(1966년)을 하게 되었고, 1976년 4월에는 시민의 사생활보호원칙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1983년 1월에는 수트클리프 사건(Sutcliffe Case)을 계기로 언론의 금전에 의한 정보수집문제 -주로 범죄관계자(범인의 가족, 친지, 이웃, 동료 등)에게 금전을 주고 취재하는 문제-에 관해 원칙을 선언하게 되었다.

공정재판을 위한 원칙선언문 (1966년)

1. 형사사건에 있어서, 어떤 신문사도 증인이나 증인이 되리라고 예상되는 자에게 정보교환

조건으로 금품제공이나 금품제공에 대한 약속을 재판종결시까지 할 수 없다.

2. 형사사건에 있어서, 어떤 증인도 재판종결시까지 자신의 증언문제에 관해 특정 신문사를 위하여 공개할 수 없다.

3. 공익에 준하지 않는 한, 범죄나 비윤리적 행위 관계자들에 관한 특집기사 작성을 위한 금품수수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본 평의회가 앞에서 선언한 것처럼, 범죄나 비윤리적 행위 관계자들의 불미스러운 비밀에 관한 기사가 공표된다면 본 평의회는 이를 유감스럽게 여길 것이다.

이 선언은 본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해 언론사 편집인들의 광범위한 지지에 기초를 둔다.

위 「원칙선언」이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의 합법적인 조사를 방해하려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공익에 준할 때는 언론사가 비행을 폭로할 수도 있다.

어떠한 강령도 모든 경우를 다 망라할 수는 없다. 본 평의회는, 위 원칙이 만족스럽게 준수되기 위해선 신문경영인들과 편집인들의 책임의식과 자유재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생활보호원칙 (1976년)

1. 개인의 사생활과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합법적으로 공익에 준하지 않는 한 본인의 허락없이 공표될 수 없다.

2. 개인의 사생활과 인적 사항에 관련된 문제를 신문사가 조사할 경우, 편집국장이 판단하기에 합법적으로 공익에 준하는 시점일 때에만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조사문제에 대해선 편집국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개인의 사생활권은 본인이 자유로운 조사와 공표를 명백하게 허락했을 경우에는 유보된다.

3.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조사와 공표는 합법적이고도 명백한 공익에 준할 때만 정당화될 수 있으며, 기자의 취재동기는 직업상의 순수한 목적의식에 의해서 이루어져야만 한바.

「공중과 관련된 이익」이라는 말이 곧 「공공의 이익」이라는 말과 그 뜻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생활을 깊이 추적하는 것이 개인의 사생활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당사자간에 분명히 인식되어야 한다. 언론에 의한 취재 및 보도가 개인의 사회적 지위,

직무수행, 직장파 대인관계에서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될 경우 보도를 보류해야 한다.

4. 속임수, 도청이나 또는 불법이 아닌 기술적 합법에 의한 사생활침해행위는 공익에 준하는 범위안에서의 정보추구행위와 정보를 취득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합법적 방법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5. 본 평의회는 기자가 동정심과 분별력을 갖고 취재하기를 기대한다. 기자들은 기사 및 사진의 게재가 공공에게 유익하다는 판단이 확실하게 서지 않는 한 낙담하고 실의에 찬 사람들에게 고통과 굴욕감을 가져다 주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

6. 언론사 편집국장들은 자사 기자들의 취재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모든 기자들이 합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개인의 사생활권을 존중해야 할 절대적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보증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

금전지불에 의한 취재에 대한 원칙

-형사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1983년)

「본 평의회가 판단하건대,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범죄관계자들로부터 정보나 사진을 입수하여 공표하는 행위가 공익에 상당히 준하지 않는 한 정당화될 수 없다.」 공중과 관련된 이익중에서(of interest to the public)라는 상황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이때 앞의 취재행위를 정당화시키려면, 언론사 편집국장은 금전지불에 의하지 않고서는 취재가 불가능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 본 평의회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서 모든 사례들이 평가되기를 희망한다. -"범죄자가 그의 범죄행위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것이 합법적이지 못하듯이, 범죄관계자가 범죄자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재정적 이익을 취하는 것이 합법적이지 못하다."

범죄자와 관련된 정보나 사진에 대해 금전적 가치를 부여하는 행위도 일종의 범죄행위이다.

사실상 그런 정보나 사진이 범죄배후에서 상거래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여기서 '범죄관계자'라 함은 범죄자의 가족, 친지, 이웃 및 동료들을 일컫는다. 언론사는 그런 자료를 입수하기 위해 중개인을 통해 직접, 간접적으로 금전을 지불해서는 안된다.

또한 자료입수를 위해 금전지불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 자료를 공표하는 데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

금전을 지불하고 범죄관계정보를 입수하는 행위는 범죄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의 가족들의 감정을 무감각하게 경시한 행위이며, 그들에 대한 일종의 폭행이므로 우리사회에서 그런 행위가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